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5 2020부산조정4 / 정정청구

기사에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과 화면구성 등으로 유추되는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현직 군의원인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 받지 않고 훼손했다가 논란이 되자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의 장비를 사용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원상복구를 진행했다고 3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농사를 목적으로 법률상 허가나 신고 없이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공연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상복구를 한 것이며, 봉사단체의 장비 사용은 단체 내의 절차를 따른 것이고 감사기간 중의 의정활동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봉사단체의 장비를 사용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그린벨트 훼손 행위의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사실만을 보도하였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그린벨트 훼손 여부는 중재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보도 중 ‘장비의 임의 사용’이나 ‘불성실한 의정생활’과 같은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화면 구성 등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신청인이 봉사단체 장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고, 중재부의 반론보도문 내용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받지 않고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정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A군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B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땅을 정비하고 경작 행위를 한 사람은 A군의회 C·D군 소속의 E의원.

지난달 24일 그린벨트에 속한 이 일대 90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질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농사를 짓더라도 높이 50cm 이상을 정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 작업이 50cm를 훌쩍 넘겼지만, A군에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는 없었습니다. [중략]

E의원은 ‘주말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고, 일부 표면만 정리만 해 법을 어기는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E / A군의원

‘개인 사유지인데 물로 계속 채워 놓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도 밭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에서 밭을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후략]

[보도 2]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받지 않고 훼손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F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군의원은 땅을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런데 A군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군의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기자입니다. [중략]

F방송사가 A군 담당과에 처음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난 6일, 하루 뒤 진입로 정비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재차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자, 담당자들은 일주일이 지난 12일야야 현장을 확인했고, 다시 나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관련 법 위반을 부인하던 E의원은, 취재가 계속되자 스스로 훼손된 땅을 원상복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G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위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5건.

A군이 평소와 달리 소속 지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해 다른 잣대로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3]

[전략] 그런데 E의원이 자신이 과거 이사장으로 지냈던 봉사단체의 장비를 자신의 땅 정비와

복구에 활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구를 한 시기가 A군의회 본회의 기간이어서, 의정활동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지적도 나옵니다. B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비추며 골목길을 나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A군 E의원, 그런데 트럭 한 칸에 집수리 봉사단체의 법인명이 적혀있습니다.

10여 년 전, 봉사단체가 후원금으로 구입한, 봉사단의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트럭입니다. E의원은 이 트럭을 수차례 자신의 땅 정비에 사용했습니다. [중략]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부인하던 E의원은, 취재가 계속되자 땅을 원상복구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혀왔는데, 복구 작업은 A군의 정례회 본회의가 시작된 이튿날 이뤄져 개인적인 문제로 의정활동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평일인 지난 12일 오전 현장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당시에, E의원은 민원인을 만나는 등의 의정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땅을 측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 / A군의원, 지난 12일

(의원님, 의정활동 할 시간 아니세요?) '지금 회의시간이 아니라 민원인 만날 수는 있어.'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현직 군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을 허가 받지 않고 훼손했다가 논란이 되자 원상복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의 장비를 사용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원상복구를 진행하였다고 연속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인 E의원은 '봉사단체의 장비 사용은 단체 내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행정감사와 관련한 의정활동 등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으며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의 <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고, 위의 보도문의 두 번째 단락(이에 대해...)을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배경화면으로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의정활동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H뉴스> 페이지 및 <굿모닝A뉴스>에 위의 <보도문>의 보도문 낭독 동영상을 게재한다.



사례 16 2020서울조정276/277, 278 (병합) / 정정, 정정, 반론청구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기사 부제목에도 신청인 측 반론을 담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공영방송사 자회사의 대표인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폭언을 하고 직원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을 요청하자 반려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직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하였고, 직원 병가 요청을 거부했다는 등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문제된 발언은 형사고발에 해당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 병가사용에 대한 반려는 A씨가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복무규정과 당시 전문노무법인의 의견을 참조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것이다.
-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었다.
- 제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 행해진 것처럼 보도되었으며 대표와 직원의 극단적 선택 간의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제목을 통해 연관성을 암시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편향되게 기사화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서로 상황과 일시가 다른 녹취물 중 특정 부분만 짜깁기 된 것이다.
- 전사워크숍 상황, 차량이슈에 대한 상황, 업무상의 과실과 배임 등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요청한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보도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나 신청인의 추가적인 반론의 필요성이 있다며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부제목에 반론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조정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부제목 : 직원들에게 “너희는 C급·D급, 아무것도 아니야” 막말
리무진 시트 포함된 업무차량 관철하려 고성·폭언에
우울증 진단받은 직원 병가 요청 반려...강제출근 지시도
A 대표 “몇몇 직원 업무처리 문제점 지적했던 것” 해명

B방송 자회사인 B미디어 A대표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대표의 폭언과 모욕, 협박 등 ‘극한 갑질’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직원 외에도 최소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A대표는 취임 직후 업무용 차량이었던 ‘현대 제네시스 G80’을 내켜 하지 않고 리무진 시트가 포함된 ‘기아 K9’ 최상위 옵션 차량을 원했다고 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인사와 총무 업무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폭언과 고성을 반복하며 괴롭힘 행위를 했다. [중략]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부장급 실무 책임자 C씨가 지난 1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 사용을 요청하자, A대표는 이를 반려했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진단서로는 출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영지원팀장에게 C씨를 ‘강제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 당일 임원회의에서 A대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라는 거 하라고, 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며 C씨를 법률적으로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C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미디어 노조의 설명을 보면, C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회사에선 ‘C씨가 원래 약물 중독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되기도 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미디어 A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대표는 “경영상 이유로 일부 직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것이고,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녹취록만으로는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 24시간 게재 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의 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마지막 부제목 부분을 「A대표 “몇몇 직원 업무처리 문제점 지적했던 것, 피해자에게 강제출근 지시한 적 없어” 해명」으로 수정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 다음)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7 2020서울조정402/403 / 각 반론청구

동일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신문 지면과 인터넷신문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문안을 다르게 하여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병원 특혜 대출에 B변호사가 개입했다는 C정당의 의혹 제기를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B는 D은행의 A병원 대출건은 소속 로펌 금융팀에서 은행에 자문했던 것이고 신청인은 이에 개입한 일이 없는데 마치 신청인이 특혜 대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고, 신청인에 대한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D은행의 A병원 대출건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D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형사팀 변호사인 신청인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 신청인은 2013년 E씨가 F은행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F은행 법무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변호한 사실은 맞으나 위 고소 사건을 위하여 A병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청인이 제안한 반론보도문 전부를 실을 수 있으나, 지면에는 반론보도문안을 간략하게 편집해 게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 반론보도 문안을 다르게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C정당은 10일 'A병원 특혜 대출'에 여권 핵심 인사인 B변호사와 G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병원 특혜 대출'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A병원 H원장이



신용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 2012년 D은행, F은행에서 수천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C정당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에 따르면, B변호사는 2013년 H원장의 특혜성 대출을 도운 F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이 H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사업가 E(63)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F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은 ‘문서 위조’를 통해 내 동의 없이 H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정당은 이 사건을 맡은 B변호사 소속 로펌은 2013~2016년까지 2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2년 B변호사 소속 로펌은 H원장이 D은행으로부터 1400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계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1

본 지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으로 C정당 의혹 제기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변호사는 “2012년 12월에 이뤄진 D은행의 A병원 대출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A병원이 아닌 D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형사팀 소속인 본인은 이에 개입하거나 아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2

본 지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으로, A병원 특혜 대출에 B변호사가 개입했다는 C정당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변호사는,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D은행의 A병원 대출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A병원이 아닌 D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검사 출신 형사팀 변호사인 본인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알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B변호사는 2013년 E씨가 F은행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F은행 법무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변호한 사실은 맞으나 위 고소 사건을 위하여 A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 1]을 신문 8면에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11.3~11.5p)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의 [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 2]를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8 2020대구조정33 / 정정청구

공적 관심사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이 아닌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의 내진성능이 낮으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 등에 걸릴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원자력발전회사 B는 맥스터가 안전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충분히 안전하게 건설되었고, 삼중수소를 포함하여 원전 주변주민에게 노출되는 방사선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어 원전 주변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편향된 왜곡보도로 신청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기존 맥스터 및 신규 맥스터가 내진 성능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원전 주변 주민에게 노출되는 방사선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고 원전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문제된 부분이 개인적인 견해나 원전 주변 주민들의 보편적인 우려를 표한 것으로, 사용후핵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공익성이 크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제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도의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MC : 자 추진경과를 좀 살펴봤는데 B회사가 이렇게 맥스터 증설을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한지 4년 만에 결정이 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C / D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5.8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맥스터 설계가 내진성능에 대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을 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진성능을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설계변경이 포함되면서 심사하는데 대개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MC : 원전시설로부터 1km도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은 어떤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략]

인근주민 : 손자들이, 어린 애들이 같이 있으니까 방사능 피폭도 있고, 내부피폭도 있고 그래서 걱정되죠. [중략]

인근주민 : 아우 많죠. 갑상선암 뿐만 아니고 멀쩡하다 싶었던 사람들도 피부암이나 폐암, 간암 등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암 환자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MC : 인근 주민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C씨 : 삼중수소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수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소가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수소는 일반수소 하고는 다르게 입자가 3개로 이뤄진 삼중수소인데요. 이러한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뿜어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기존 맥스터의 내진설계 성능이 낮다는 D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 측은 “1차로 건설된 맥스터의 설계기준지진은 0.2g, 규모6.5 수준으로 안전하게 건설됐으며, 충분한 내진성능 값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원전 반경 5킬로미터 거주 여성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부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C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해, B회사 측은 B회사를 상대로 일부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갑상선암 발병과 피폭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시간 중에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 중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방송시작 직후 자막(A원전을 둘러싼 갈등)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아나운서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이 방영된 방송분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섹션 최신VOD 코너에 등록시 위의 보도문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청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제목, 본문, 보도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보도할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방송하기에 앞서 신청인 측에 사전 통보한다.

사례 19 2020충북조정11·12·13 /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정대상 기사를 이미 삭제했으나 신청인의 별도 보도 필요 소명에 따라 중재부에서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종합건설회사인 신청인이 시공한 고무 교좌장치 중 90% 이상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해당 교좌장치 공사를 '하청에 3도급 재하청' 하였으며 KS 순정 부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회사는 보도에서 고무 교좌장치 균열의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는 정식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뿐, 이를 재하도급 준 사실이 없으며 공사에 사용된 교좌장치는 도에서 제공한 부품으로 신청인이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반론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교좌장치를 부실공사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해당 공사를 하청에 3도급 재하청을 하지 않았고 정품자재가 아닌 비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기사를 삭제하였으며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기사가 게재된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있으므로 보도게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중재부는 기사가 이미 삭제된 상태이나 반론보도를 새로이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A회사 측에서는 ① 'B교'의 고무 교좌장치 중 90% 이상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② 공사를 '하청에 3도급 재하청'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③ KS 순정 부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와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섹션에 게재하되 게재 당일 12:00(정오)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위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사례 20 2020서울조정1473/1474 / 각 정정청구

조정신청 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는데, 해당 반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수정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가 진행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특정 언론사가 전면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단체는 모니터 대상에 B언론사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부러 해당 언론사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의제재 건수가 적은 프로그램을 모니터 대상에서 빼면서 제외된 것인데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시민언론단체로서 명예와 언론보도 감시활동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반론보도문에서 신청인 A단체가 진행한 사업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사업 취지를 왜곡했다.
- B언론사의 메인뉴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해당 방송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면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B언론사 시사 대담프로그램이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모니터원 감소로 문제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모니터링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 A단체는 행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대담프로그램 모니터 대상을 결정했다.

■ 조정결과

조정신청 전 신청인의 요청으로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반론보도에 대해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반론보도문에 사업명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입장이 조정대상기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사 본문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그러나 A단체는 모니터 담당자가 줄어 일부 기간만 B언론사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기간은 포함됐다고 알려왔습니다. A단체가 B언론사를 모니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올 1월 이후 A단체의 종편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C언론사·D언론사·F언론사 3사 프로그램만 대상이었고, B언론사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바로잡습니다>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정정하면서, A단체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의 모니터 대상에서 B언론사를 전면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단체는 B언론사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B언론사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의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하위 프로그램인 C언론사와 B언론사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결과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수정사항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중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을 「양성평등 팩트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으로 수정한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12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위에 따라 수정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의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 및 반영되도록 한다.

사례 21 2020강원조정32·33/34·35 / 각 정정·손배청구

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책자 납품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갑질’, ‘뒷돈’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가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요구하였고, 서점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거래를 끊는 등 공무원 ‘갑질’ 논란이 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서점 주인과 상품권 지급에 대해 협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면 이는 도서 구입에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갑질과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납품 지연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것이다.
-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 상품권을 지급 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된다.

■ 조정결과

심리 결과, 중재부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갑질’, ‘뒷돈, 리베이트 관행’ 등으로 다소 과하게 표현하고, 신청인의 반론은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물건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뒷돈, 이른바 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이 이제는 없어질만도 한데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 :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금액의 5%를 문화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중략]

도서관 측은 납품 기일이 늦어서 계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요구한 건 맞지만 도서관 운영비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들 욕심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놓는 게 저희 욕심이잖아요.”

A도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곧 감사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측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게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 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무원 갑질’이나 ‘뒷돈 챙기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정기간행물 납품 지연으로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위의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뉴스> 8 뉴스섹션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24시간 동안은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나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24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뉴스> 8 뉴스섹션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상자 처리하여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2 2020서울조정1969·1970 / 정정·반론청구

제보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담긴 보도에 대해 중재부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복지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보직에서 면직시키는 동시에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 등을 강요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복지시설 원장은 A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깎은 사실이 없고 해당 복지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발언을 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보자 일방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 파악 없이 신청인을 악덕 원장으로 기사화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삭감한 바 없다.
- A복지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다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센터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적한 것이다.
- 이는 A복지사의 업무태만을 지적한 업무 범위 내 권한 행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해 보도했으므로 정정보도 게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보도 대신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16일 B통신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3년 넘게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여성 A씨는 원장 등 관계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12월 휴직을 결정했다.

당시 복지운영팀장이었던 A씨는 시설 측이 갑자기 해당 팀의 인력을 줄이는 등 비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원장 등이 자신을 팀장 보직에서 면직시키는 동시에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할 것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A씨에게 “야 이 X끼야”, “미꾸라지 같은 것이”, “이게 확 씨. 지X하고 있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고용노동부 북부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지청)과 C구청 산하 C구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내부조사에 착수한 이들 기관은 A씨가 당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사회복지기관 원장이 A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과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A복지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A복지사의 근로계약서는 부서 변경에 따라 새로 작성된 것이고 급여가 삭감된 것이 아니며, A복지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다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센터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는 A복지사의 업무태만에 따른 것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전체화면의 50% 이내)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12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들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의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사례 23 2020서울조정2102, 2020서울조정2103 (병합) / 각 정정청구

신청인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대신 방송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교사들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학교에서 단체 음주를 했고 신청인 교육청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நட장 조치를 했으며 이 조치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교육청은 음주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학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러한 제반 절차는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올라온 8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마치 신청인이 நட장조치를 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교육청은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오기 전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징계 의결,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따라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청와대 청원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대신 원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막걸리 술판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은 틈에 벌인 일인데, 드러난 것만 스무 번입니다. 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서야 넉 달 만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략]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 : 출근해서 점심을 먹게 되면 날마다 술이 나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시작된 술이 퇴근할 때까지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장까지 함께 마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A교육청의 조사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20번 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5월 초 사건이 A교육청에 접수됐는데 닉 달가량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자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말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A교육청은 정확히 조사하느라 징계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A교육청은 “닉 달 동안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달리 청와대 청원이 공개된 8월 20일 이전인 8월 3일 이미 해당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을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낭독하도록 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4 2020서울조정2585/2586/2587 / 각 정정청구

중재부의 권유로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3개 매체 뉴스면 초기화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효과를 제고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교수로 임용된 신청인이 모 업체 대표를 겸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상 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교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데 마치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여 법적 문제가 되는 교수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술인증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교수는 벤처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절차에 따라 ‘겸직허가서’를 받은 상태였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학교측의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사에서는 인터넷의 원 보도 하단에만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중재부의 권유로 3개 매체 뉴스면 초기화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효과를 제고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교수 채용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올해 초 조교수로 채용한 A씨가 채용 이후 지금까지 이전에 맡고 있던 한 업체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사학법과 대학 자체 규정위반입니다.

A교수 운영 업체 관계자 : “(대표이사께서 A선생님이 맞는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B대 교수님도 하신다는데?) 네, 맞습니다.”

대학 측은 2캠퍼스 운영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방송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업체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고 언급된 A교수는 “올해 초 채용 당시부터 학교에 검직을 요청해 지난 6월 검직 허가를 받았고, 7월 말 벤처기업 인증도 받아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대표를 겸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 프로그램 및 초기화면에 각각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각각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 2020경남조정89·90/91·92/93·94 /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방송 토론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군에서 B군위원의 땅 앞에 다리를 놓아줘 차익을 보게 됐다는 내용을 토론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사실상 신청인의 땅과 다리 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량설치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또는 설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B군위원은 교량설치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 소유 땅에 다리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도 없었다.
- 해당 교량은 인근 C모씨 소유 농장의 전용진입도로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사설 진입교량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흐름의 위험성으로 인해 철거하고 안전성이 높은 위치로 옮겨 이설한 것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지역사회의 합리적인 의심을 보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중재부는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보도 중 토론 프로그램에 한해 반론보도를 내보내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토론자 1 : 저 사안은 특히나 문제의 B의원이 A군의회 산업건설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를 놓는 것을 주도했던 게 도시건축과고요, 그러니까 관련부서 아닙니까 그죠? [중략] 이익을 받은 B의원이라든지 그 남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라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싶은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구요. [중략]

토론자 2 : 그 다리를 놓고난 이후에 또 갑자기 땅값이 다리로 인해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략]

토론자 3 : 공무원이 의원님의 비위를 맞춰준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후략]

[보도 2]

D도 A군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새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직 군의원의 땅 바로 앞인데, 다리 덕에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략]

땅의 주인은 D도 A군의회 B의원, B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6,600㎡를 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B의원이 땅을 산 지 열 달 뒤인 지난해 12월, A군은 군 예산 5천 5백만 원을 들여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놔줍니다. [중략] B의원은 다리를 놓을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B씨 / A군의회 의원 : “저희 땅과 인접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하고 10여m 떨어져 있어서. 저는 알지도 못했구요…”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사는 지난 10월 13일 A군이 B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해줘 B의원이 차익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B의원 측은 해당 교량은 애초 인근 토지 소유주의 민원 제기에 따라 현 위치에 재설치된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교량은 현재 설치된 교량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교량의 설치 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보도방법

- 위의 보도문 제목 및 본문을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여 내보낸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 송출영상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에도 포함하여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섹션 초기화면 중 '방송내용' 목록에 위의 보도문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통상적인 게재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의 보도문 제목과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되어있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6 2020광주조정79 / 반론청구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계약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한 비판에 보도내용이 집중되고 반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B시(市)로부터 임차한 철도복합시설과 철도관사를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업체는 게스트하우스 등 운영 목적으로 B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을 준비했으나 임대인인 B시가 서류 처리를 지연하여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 고의적으로 미등록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 A업체는 B시와 ‘게스트하우스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철도복합문화시설 2층과 철도관사 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정도면 게스트하우스 등록 관련 행정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픈을 준비했으나, B시가 임대인으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비하지 못하는 서류 4건에 대한 처리를 지연해 등록이 되지 않았다.
- 이에 계약기간 동안 건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며 A업체가 B시 문화도시 사무국으로부터 밴라이프형 용역을 수주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익명 처리하였고 불법 숙박업 운영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게스트하우스 등록을 하지 못한 신청인의 사정이 있고 반론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을 감안, 양 당사자가 합의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B시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 귀촌 'B시 살자'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나 사무국이 해당 업체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사무국은 유형별로 4곳의 업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용역을 체결했다. 이 중 밴 라이프형 유형으로 용역을 체결한 'A업체'는 B시 건물을 임차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심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숙박시켰으며 'C업체' 대표는 'A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취재기자는 지난 22일 사무국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사무국 관계자 D 모씨는 “숙박료를 지불 하지 않으면 무료 거주에 해당돼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B시와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되어 추후 문제 될 것이 없다.”라며 해당 업체와 용역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무허가 숙박 공간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법의 하나였을 뿐 불법 숙박 업체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A업체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은 B시 관계부서가 작년 9월부터 서류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B시를 운운, A업체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는 부분이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 조정대상보도에서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고 보도된 업체는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해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① 본 업체는 2019년 6월 1일 B시와 '게스트하우스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계약서에 명시) 철도복합문화시설 2층과 철도관사 2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② 계약 후 1개월 정도면 게스트하우스 등록 관련 행정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픈을 준비했으나, B시가 임대인으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비하지 못하는 서류 4건에 대한 처리를 B시가 지연해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 ③ 청년소상공인인 본 업체는 계약 당시 임대료(월 임대료 2,624,000원)를 일괄 납부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미룰수 없었던 사정입니다.

- ④ 본 업체가 B시 문화도시 사무국으로부터 밴라이프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E도자치뉴스면 위에서 2번째 기사로 위의 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27 2020전북조정100 / 반론청구

반론권 부여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인정해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 귀농귀촌협의회장인 신청인 B씨가 귀농을 선택한 사람들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이들에게 10억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귀농인들이 매입한 땅의 매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토지의 지목 및 현황에 대해서 귀농인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 귀농인들이 신청인을 기소한 사건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신청인이 귀농인을 속여 폭리를 취했다고 왜곡보도를 해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귀농인이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이를 증명할 자료로 H지방검찰청 A지청의 불기소이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A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공익보도로 작성 전 충분히 제반 사항을 조사하였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보도에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반론권 부여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인정했고 양 당사자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귀농으로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A씨 청년들의 영상인데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 A씨 귀농귀촌협의회를 만나고부터였다고 하는데, 이 귀농귀촌을 도와야 할 협의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년들.

〈동영상〉 귀농청년 : 저는 C, 저는 D, 저는 E입니다. 저희는 함께 서울에서 F도 A시로 귀농했어요. 귀농하면서 사기 맞아서 빚이 10억이에요. 화병 났습니다. 네 우울증도 왔습니다. 저는 살도 30키로나 쪼어요. 한마디로 귀농실패. [중략]

청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B씨.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정받는 그를 귀농청년들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땅을 구입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게 했다는 B씨.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토지는 B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귀농청년 : 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희가 산 땅의 주인은 아내 명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집을 지은 **건설에 **명의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농 청년들이 산 땅의 전 주인은 귀농귀촌협의회장 B씨의 아내, 해당 토지를 건설사 대표 G씨에게 판 뒤에 건설사 대표는 귀농 청년들에게 3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심지어 B씨는 땅 소유자인 G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건축을 맡기기도 한 상황. 그리고 이곳에 건물 네 채를 짓게 했다는 B씨. [후략]



사례 28 2020강원조정40/41 / 각 반론청구

신청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반론을 충분히 신지 않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학교 체육코치 A씨가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수들에게 인격모독 및 욕설을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았고, 선수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는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체육코치 A씨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선수들에게 인격 모독과 욕설을 하였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기사에 보도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19**년 B올림픽 C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모 중학교 지도자 A씨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무리한 금품 및 향응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됐고 최근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코치의 비리 행위가 알려진 것은 지도를 받아 오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부모들이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19**년 B올림픽 C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중학교 코치 A씨가 상습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게 인격 모독과 욕설을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선수들에게 인격 모독과 욕설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5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나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24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